제식장 크라샤 작업 중 떨어진 암석에 맞음

재 해 개 요

'14. 9월 경북 의성군 소재 채석현장에서 피재자가 분쇄기(죠 크라샤)에서 떨어진 암석에 맞아 쓰러지면서 주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

재해상황도

재해발생상황

※기인물(암석)

- 부피 : 700cm³ - 무게 : 약 1.8kg

- 특성 : 석영이 주성분을 이루고 조직이 치밀하며 표면이 반질반질하고 밝은색을 띔

- 피재자는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퇴적된 석재물을 제거하거나 공구를 가지고 오기 위해 가동중인 죠 크라샤 하부로 진입했던 것으로 추정
- 사고 당시 피재자는 작업용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, 안전모는 턱끈을 매지 않은 상태였음
- 상부에 낙하물방지망(바닥으로부터 2.2m 높이)은 일부 설치되어 있었으나, 피재자가 쓰러진 지점의 상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
- 죠 크라샤 하부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가동중인 조크라샤에서 떨어진 암석에 맞아 쓰러지면서 컨베이어 구조물에 재차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로 추정됨

재해발생 원인

- 조크라샤 가동 시 상부 투입구 등에서 암석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었으나,
 -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크라샤 하부에 접근하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,
 - 낙하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한 낙하물방지망도 일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
- ㅇ 피재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ㅇ 낙하물로 인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,
-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, 수직보호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함
- ㅇ 안전모는 반드시 턱끈을 고정하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함

관련 법규

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-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,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,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
 - 2.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